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9. 18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9.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98. 9.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강석준)

가. 제안이유

-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자치 12200-1252, 98. 6. 23)에 의거 사업소의 기획기능과 집행기능 일원화 방침에 따라
- 공원 관련부서 통·폐합하여 녹지공원 관리업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개정

나. 주요골자

- 녹지, 공원 관련부서 통·폐합 일원화
 - 녹지과 + 공원관리사업소 →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설치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가 통폐합되어 변경되는 기구 명칭으로 반대의견 없이 전원 찬성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1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자치 12200-1252, 98. 6. 23)에 의거 사업소의 기획기능과 집행기능 일원화 방침에 따라
- 공원 관련부서 통·폐합하여 녹지공원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개정

주요골자

- 녹지, 공원 관련부서 통·폐합 일원화
 - 녹지과 + 공원관리사업소 →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설치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녹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1조(설치)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녹지공원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도시녹화사업 및 산림에 관한 사항
2. 공원조성 및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